

제1893호

2022. 12. 1.(목)

영등포구보

규 칙

- 제83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3
- 제84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
- 제841호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규칙 등
2개 규칙 폐지규칙 5

고 시

- 제2022-185호 도시계획시설(철도:도시철도)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신풍역) 6
- 제2022-186호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준공인가 고시 9
- 제2022-189호 양남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 10
- 제2022-19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2

다음장에 계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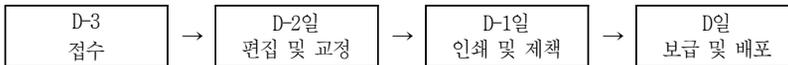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
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<http://www.ydp.go.kr(영등포소식→새소식→영등포구보)>에 게재되고
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◎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(☎ 02-2670-7556 / 전송: 02-2670-3581)

◎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(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,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)

◎ 구보게재접수는 D-3일(월요일)까지 접수



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

3180244-0100-2022

공 고

- 제2022-2046호 문래동2가A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공람공고 14
- 제2022-2055호 공인 등록 공고 27
- 제2022-2064호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 28

규 칙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최 호 권 인
2022년 12월 1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839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청탁” 을 “부정청탁” 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그 밖에 구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최 호 권 인
2022년 12월 1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840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 중 “주택과장·도시계획과장·도시재생과장”을 “주택과장·도시계획과장·주거사업과장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17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32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분양가심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제36조의 제목 “(도시재생과)”를 “(주거사업과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도시재생과장”을 “주거사업과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개량개발사업시행규칙 등 2개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최 호 권 인
2022년 12월 1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841호

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주택개량개발사업시행규칙 등 2개 규칙 폐지규칙

제1조(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개량개발사업시행규칙」의 폐지)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개량개발사업시행규칙」을 폐지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간호사복제규칙」의 폐지)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간호사복제규칙」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2-185호

도시계획시설(철도:도시철도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신풍역)
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-77호('93.3.18.)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8-133호('93.4.2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6호('12.1.12.)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철도:도시철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철도:도시철도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 법 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1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결정취지

도시철도 7호선 신풍역 6번 출입구 일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에게 보행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(철도:도시철도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는 사항임.

2.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

가. 도시계획시설(철도:정거장) 결정(경미한 변경)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신풍역	도시철도	신길동 3599번지 일대	6,623.5	증) 69	6,692.5	93.3.18. (서고77)	경미한 변경 (증 1.04%)

나. 변경 사유서

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철도 (신풍역)	• 면적 증가 - 6,623.5㎡ → 6,692.5㎡(증 69㎡)	• 교통약자에게 보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철도:도시철도) 면적 증가

3. 관계도면: 붙임 참조

※ 붙임 도면은 공보에 고시하기 위한 도면으로써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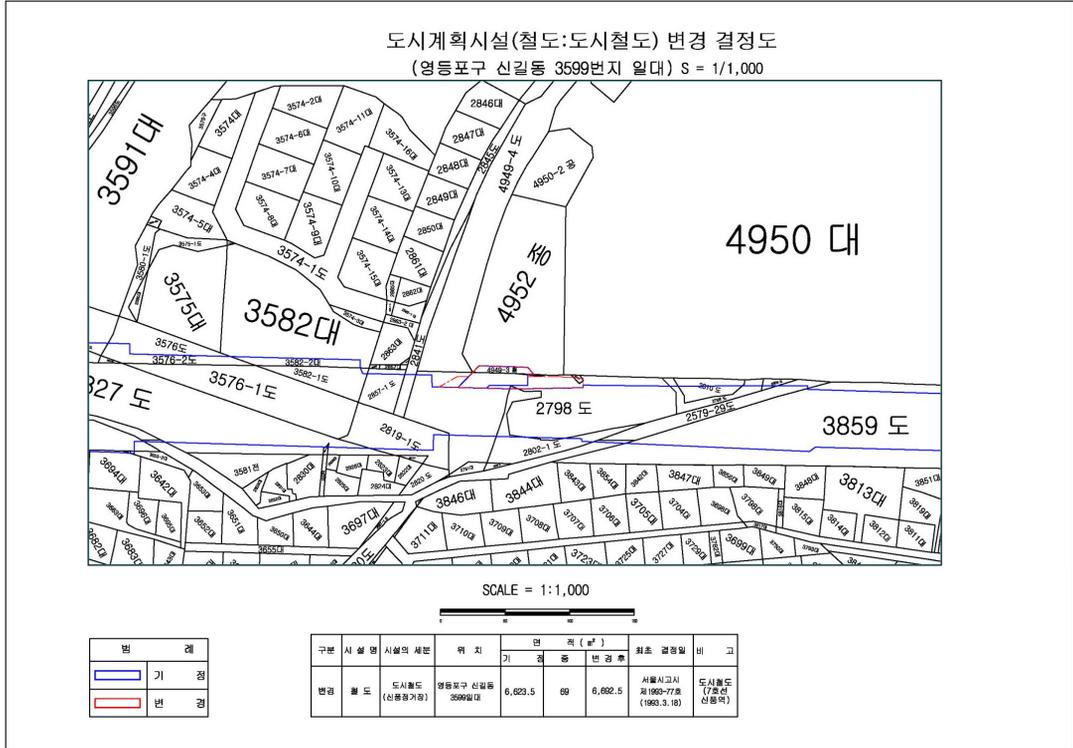
4. 열람장소

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 도시계획과(☎ 02-2670-3523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(<https://urban.seoul.go.kr>) 및 토지e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시계획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도

■ 도시계획시설(철도:도시철도) 결정(경미한 결정)도

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2-186호

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(안)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45호(2007.11.29.)로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25호(2010.04.08.)로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결정 되고, 영등포구고시 제2010-52호(2010.09.24.)로 사업시행인가 된 이후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7호(2013.01.17.)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29 호(2016.08.04.)로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결정 되고, 영등포구고시 제2016-77호(2016.08.18.)로 사업시행인가 변경인가된 이후, 영등포구고시 제2017-82호(2017.08.03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1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시행구역의 위치(면적)
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54-40번지 일대(38,502.9㎡)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신길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김장수)
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2길 3, 3층
4. 준공인가의 내역
 - 건축물: 9개동, 지하3층/지상32층,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, 용적률 251.08%
 - 정비기반시설: 도로, 공원, 녹지
5. 준공인가일: 2022. 11. 25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2-189호

양남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6-110호(2016.12.08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양평동1가 30번지 양남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하고, 동법 제7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1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 - 가. 종 류 : 시장정비사업
 - 나. 명 칭 : 양남시장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 - 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30번지
 - 나. 면 적 : 1,956.7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)
 - 1) 가. 성 명 : 양남시장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강국진)
 - 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4길 4, 2층
 - 2) 가. 성 명 : 서울주택도시공사 (사장 : 김헌동)
 - 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
4.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: 2016년 11월 30일
5.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의 요지
 - 가.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비고
합 계		1,956.7	
정비기반시설	-	-	
택 지	택 지1	1,956.7	공동주택 및 판매시설

나. 건축개요(변경)

건축면적	1,341.2247㎡	건축연면적	13,605.3810㎡
건 폐 율	68.5452%	용 적 률	398.6892%
건축규모	지하4층 ~ 지상12층 공동주택 1개동 79세대,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		

다. 분양 규모 등 분양계획(변경)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 공급세대수							상가 면적(㎡)
	계	28㎡	29㎡	44A㎡	44B㎡	59A㎡	59B㎡	
계	79	1	1	20	20	18	19	4,864.28
토지등소유자	25		1	2		16	6	1,217.40
보류시설	-							-
일반분양	16	1				2	13	2,643.52
공공지원민간임대	38			18	20			1,003.36

※ 공공지원민간임대 44형 38세대(44A 18세대, 44B 20세대) 및 2층 상가 일부(1,003.36㎡)는 (주)서울 도시재생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일괄매각 예정

라. 권리자별 관리처분계획(변경)

(단위: 인)

대상자	분 양				청산·수용 협의매수
	소계	주택	상가	주택 및 상가	
41	37		12	25	4

마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(해당없음)

바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(해당없음)

- 기존 건축물 2016년 9월 30일 철거 완료

※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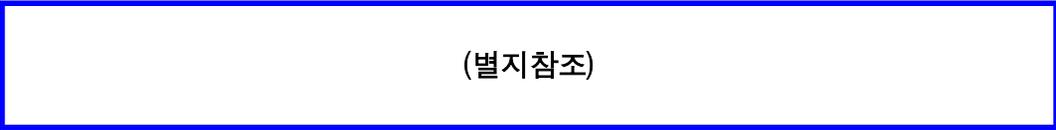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2-190호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1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26 외 1건

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(☎2670-3722)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,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-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■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이동 사유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7-3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26 (양평동3가)	20221201	신규 부여	20100422	옛 선유봉의 이름 사용	
2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875-18, 875-19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10길 16 (대림동)	20221201	신규 부여	20100527	대림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	

고 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-2046호

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공람공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17호(2013.07.11.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420호(2021.07.29.)에 의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(정비계획 변경 결정 포함)된 문래동2가 26번지 일대 “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”에 대하여 「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(변경) 주민제안에 있어 「같은 법」 제15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문래동2가A 도시 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. 본 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2022년 12월 1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22.12. 1. ~ 2023. 1. 2. (30일 이상)

나. 공람장소 :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(☎02-2670-3802)

다. 공람내용 :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

라.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
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 (변경없음)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정비 유형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영등포구 문래동2가 30-1번지 일원	41,680.2	-	41,680.2	일반 정비형	-

2. 지구지정 조서 (변경)

구분	지구명	위 치	시행면적 (㎡)	구분		비고
				획지 (㎡)	정비기반시설 (㎡)	
기정	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	영등포구 문래동2가 26번지 일원	3,214.7	2,719.6	495.1	평균 순부담률 15.4%
변경	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	영등포구 문래동2가 26번지 일원	3,338.1	2,700.9	637.2	4지구 편입토지의 공부상 면적 및 기 결정된 정비기반시설 중 기부채납 면적 반영

■ 변경사유

구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획지면적 변경 [2,719.6㎡→2,700.9㎡, 감)18.7㎡] • 정비기반시설 면적 변경 [495.1㎡→637.2㎡, 증)142.1㎡]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4지구 편입토지의 공부상 면적 반영 및 기 결정된 정비기반시설 중 부담된 도로 및 공원의 면적을 포함하여 시행면적 변경

3. 토지이용계획 (변경)

구 분	면 적(㎡)			비율(%)	비 고	
	기정	변경	변경후			
합 계	2,719.6	증) 618.5	3,338.1	100.0	-	
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-	증) 637.2	637.2	19.1	기 결정된 정비기반시설 중 4지구 부담면적 반영
	도 로	-	증) 110.6	110.6	3.3	
	공 원	-	증) 526.6	526.6	15.8	
대지(획지)	2,719.6	감) 18.7	2,700.9	80.9	4지구 편입토지의 공부상 면적 반영	

※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

구 분	면 적(㎡)			비율(%)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3,338.1	-	3,338.1	100.0	-
준공업지역	3,338.1	-	3,338.1	100.0	-

5.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

가) 교통시설

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규 모				기능	사용 형태	연장 (m)	기점	종점	주 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대로	1	45	35	주간선 도로	일반 도로	4,750 (32)	문래동광장	오류동광장	-	서고422호 (84.7.24)	-
기정	중로	1	E	14~20 (15)	집산 도로	일반 도로	622 (90)	문래동2가 24-1	문래동4가 28-11	-	서고49호 (46.8.13)	-
기정	소로	2	984	8	-	일반 도로	39	문래동2가 27	문래동2가 29-1	-	서고420호 (21.7.29)	-
기정	소로	2	985	8	-	일반 도로	220 (61)	문래동2가 24-3	문래동2가 36-6	-	서고420호 (21.7.29)	-

※ ()는 4지구 내 해당하는 사항임

나) 공간시설

1) 공원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명칭	세분류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7	공원	문화 공원	문래동2가 20-3번지 일원	1,379.4 (526.6)	-	1,379.4 (526.6)	서고420호 (21.7.29)	4지구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

※ ()는 4지구 내 해당하는 사항임

6. 정비기반시설의 설치(부담)계획 (변경)

가)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

구분	사업 지구	시행면적 (㎡)	대지면적 (㎡)	정비기반시설 면적(㎡)	용도폐지되는 기존정비기반 시설면적(㎡)	순부담 면적(㎡)	순부담률 (%)	비고
							기반시설 등	
기정	4지구	3,214.7	2,719.6	495.1	-	495.1	15.4	-
변경	4지구	3,338.1	2,700.9	637.2	-	637.2	19.1	-

※ 순부담률 = 순부담면적 / (시행면적 - 용도폐지 되는 기존정비기반시설면적)

※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■ 변경사유

구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지면적 및 정비기반시설 면적 변경에 따른 시행면적 변경 - 증) 123.4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지면적 변경 및 정비기반시설(도로, 공원) 기부채납에 따른 시행면적 증가

나) 정비기반시설 설치(확보)계획

1)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

구 분		면 적(㎡)			비율(%)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-	증) 637.2	637.2	100.0	-
	도 로	-	증) 110.6	110.6	17.4	-
	공 원	-	증) 526.6	526.6	82.6	-

※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기결정된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중 부담면적 반영

2) 정비기반시설 편입토지

구 분	시설의 종류	위 치	공부상면적 (㎡)	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(㎡)	소유자	비 고
합 계			3,338.1	637.2	-	-
1	도 로	문래동2가 26번지	1,477.0	30.9	영등포농업 협동조합	-
2		문래동2가 27번지	1,334.5	79.7		-
소 계			2,811.5	110.6	-	-
3	공 원	문래동2가 20-3번지	526.6	526.6	영등포농업 협동조합	-
소계			526.6	526.6	-	-

7.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정비·개량계획(동)					비고
	명칭	면적 (㎡)	명칭	면적 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
변경	문래동2가 A구역	41,680.2	4지구	2,700.9	문래동2가 26번지일대	6	-	-	6	-	-

8. 건축물에 관한 계획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주 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비고
	명칭	면적 (㎡)	명칭	면적 (㎡)						
기정	문래동2가 A구역 4지구	3,214.7	4지구	2,719.6	문래동2가 26번지일대	-	60 이하	300/400/α	80 이하	-
변경	문래동2가 A구역 4지구	3,338.1	4지구	2,700.9	문래동2가 26번지일대	산업 시설	60 이하	300/400/545.4	80 이하	-

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	[불허용도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5조제4항제1호의 노인복지주택, 오피스텔, 다중생활시설 - 단, 비주거용도가 개발용적률의 100분의 100이상이인 복합용도인 경우 허용 										
	[권장용도]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주용도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권장용도(전층)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반 정비형 구역</td> <td>업무(산업)·판매, 근생·주거 등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별표2 제3호의 산업시설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(게임제공업소 제외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회의장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의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분	주용도	권장용도(전층)	비고	일반 정비형 구역	업무(산업)·판매, 근생·주거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별표2 제3호의 산업시설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(게임제공업소 제외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회의장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의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 	-
	구분	주용도	권장용도(전층)	비고								
일반 정비형 구역	업무(산업)·판매, 근생·주거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별표2 제3호의 산업시설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(게임제공업소 제외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회의장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의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 	-									
<p>※산업시설의 범위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용도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산업 시설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4호 너목(제조업소, 수리점 등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5호 라목(전시장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0호 마목(연구소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4호 나목(일반업무시설) * 오피스텔 제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7호 공장 </td> <td>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10호의 산업시설 준용</td> </tr> <tr> <td>산업 지원 시설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지원시설 - 단, 기숙사는 산업지원시설 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 1이하인 경우만 허용 </td> <td>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하에 한정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구분	용도	비고	산업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4호 너목(제조업소, 수리점 등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5호 라목(전시장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0호 마목(연구소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4호 나목(일반업무시설) * 오피스텔 제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7호 공장 	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10호의 산업시설 준용	산업 지원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지원시설 - 단, 기숙사는 산업지원시설 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 1이하인 경우만 허용 	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하에 한정
구분	용도	비고										
산업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4호 너목(제조업소, 수리점 등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5호 라목(전시장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0호 마목(연구소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4호 나목(일반업무시설) * 오피스텔 제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7호 공장 	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10호의 산업시설 준용										
산업 지원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지원시설 - 단, 기숙사는 산업지원시설 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 1이하인 경우만 허용 	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하에 한정										

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용적률 : ①+②+③ = 545.4% → 545.4%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: 300% ② 허용용적률 : 100%적용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	구분	인센티브 대상	요건	산정 방식	완화량 또는 계수	적용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의무	녹색건축물 인증 등	친환경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 준용 및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※ 신재생에너지비율은 에너지총량을 줄인 만큼 서울시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상 성능 대체비율에 따라 완화 가능	기준등급 준수시 허용용적률 총량의 1/2 부여	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계획 유도	지역별 도시경제 활성화 유도	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별표2 제3호의 산업시설 등 권장용도 설치시	정률 부여	권장용도 비율에 비례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합계					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허용용적률 인센티브						100% 적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③ 상한용적률 : 145.4%완화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구 분</th> <th>적용기준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사업시행면적</td> <td>①</td> <td>3,338.1㎡</td> <td>문래동2가A구역 4지구</td> </tr> <tr> <td>획지면적</td> <td>②</td> <td>2,700.9㎡</td> <td>공공시설 등 제공 후 대지면적</td> </tr> <tr> <td>계획공공용지</td> <td>③</td> <td>637.2㎡</td> <td>도로 110.6㎡ / 공원 526.6㎡</td> </tr> <tr> <td>기존공공용지</td> <td>④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순부담면적</td> <td>⑤</td> <td>637.2㎡</td> <td>③-④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α</td> <td>0.235921</td> <td>⑤÷②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</td> <td colspan="2">• 허용용적률 × (1.3 × α) = 122.6%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공개공지 의무면적 초과제공</td> <td colspan="2">• 허용용적률 × {(공개공지면적 - 의무면적) / 대지면적} = 400% × {(343.63㎡ - 189.06㎡) / 2,700.9㎡} = 22.8%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합계</td> <td colspan="2">145.4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		구 분		적용기준	비 고	사업시행면적	①	3,338.1㎡	문래동2가A구역 4지구	획지면적	②	2,700.9㎡	공공시설 등 제공 후 대지면적	계획공공용지	③	637.2㎡	도로 110.6㎡ / 공원 526.6㎡	기존공공용지	④	-	-	순부담면적	⑤	637.2㎡	③-④	α		0.235921	⑤÷②	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		• 허용용적률 × (1.3 × α) = 122.6%		공개공지 의무면적 초과제공		• 허용용적률 × {(공개공지면적 - 의무면적) / 대지면적} = 400% × {(343.63㎡ - 189.06㎡) / 2,700.9㎡} = 22.8%		합계		145.4%	
구 분		적용기준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업시행면적	①	3,338.1㎡	문래동2가A구역 4지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획지면적	②	2,700.9㎡	공공시설 등 제공 후 대지면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획공공용지	③	637.2㎡	도로 110.6㎡ / 공원 526.6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존공공용지	④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순부담면적	⑤	637.2㎡	③-④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α		0.235921	⑤÷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		• 허용용적률 × (1.3 × α) = 122.6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개공지 의무면적 초과제공		• 허용용적률 × {(공개공지면적 - 의무면적) / 대지면적} = 400% × {(343.63㎡ - 189.06㎡) / 2,700.9㎡} = 22.8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계		145.4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건축선에 관한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한계선 : 경인로변 3m, 경인로77길변 2m, 소로2-984호·소로2-985호변 2m • 벽면한계선(1층) : 경인로변 5m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개공지 : 경인로 및 경인로77길 교차지점 가각부 공개공지 위치지정 ※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량(22.8%)에 해당하는 공개공지 의무면적 초과 확보 • 차량출입불허구간 : 경인로 및 경인로77길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9. 환경성 검토결과

검토항목		목표기준	준수 여부	현황 및 검토결과	계획에의 반영사항	
자연 생태 환경	1. 바이오톱	바이오톱 보전 등급 향상	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바이오톱유형 : 상업지 • 주변 공원과 연계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근 공원과 연계성을 갖도록 공개 공지를 확보하여 생태적 네트워크 기능을 확보해 바이오톱 공간 조성 	
	2. 생태 네트워크	녹지·수생태 연결성 확보	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태적 가치를 갖는 공간이 형성되지 않음 • 서측 도림천 생태공원과의 생태적 가교환경 형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획지구 인근 정비사업을 통해 계획된 공원, 녹지 공간과의 생태네트워크 형성 	
생활 환경	토지 환경	3. 토지 이용	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위계획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계획수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준공업지역 재생을 통해 산업혁신기반을 구축하고 기존 토착영세산업의 보호/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생활권 발전 목표에 부합 	
	물 환경	4. 물순환, 수리·수문	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강우수의 지표흡수를 통한 물순환 어려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효율적인 물순환을 위해 계획지구내 생태면적을 27.94%를 확보하였으며, 자연지반녹지를 최대한 확보 (법정조경면적의 약22%) 하여 강우수의 침투가 용이 하도록 계획 	
		대기 환경	5. 바람	바람길 확보	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균풍속 2.42m/s •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시가지
	6. 열		열 환경 영향 최소화	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저층건물밀집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계획기법 도입
	7. 대기질·미세먼지		대기오염 최소화	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초미세먼지 기준치 초과 • 공사 및 운영시 오염물질 발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사 시 : 먼지저감 대책 실행 • 운영 시 : 대기오염 정화 수종 식재 유도
	8. 온실가스		온실가스 저감	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운영 시 냉·난방에 의한 오염원이 발생 될 것으로 판단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운영 시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 등 온실가스 저감방안 대책 실행

생활환경	기타	9. 친환경적 자원 순환	폐기물발생량 최소화	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사 시 건설 및 생활 폐기물 발생 • 운영 시 생활폐기물 발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사 시 혼합건설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, 분별해체 노력 • 운영 시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을 제고
		10. 에너지	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	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시가스 활용, 기존 신재생에너지 시설 없음 • 에너지 절감방안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계획기법 도입
		11. 소음·진동	소음·진동 최소화	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사 시 소음 및 진동 발생 (80미터 이내 영향권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설방음판넬 설치, 공사 차량 주행속도 제한 등 조치
		12. 휴식 및여가공간	휴식·여가공간 최대확보	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내 공원 108개소 • 인근 공원 활용률 저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개공지 등의 휴게공간을 마련 하여 시설이용자 편의 제공

10. 정비사업 시행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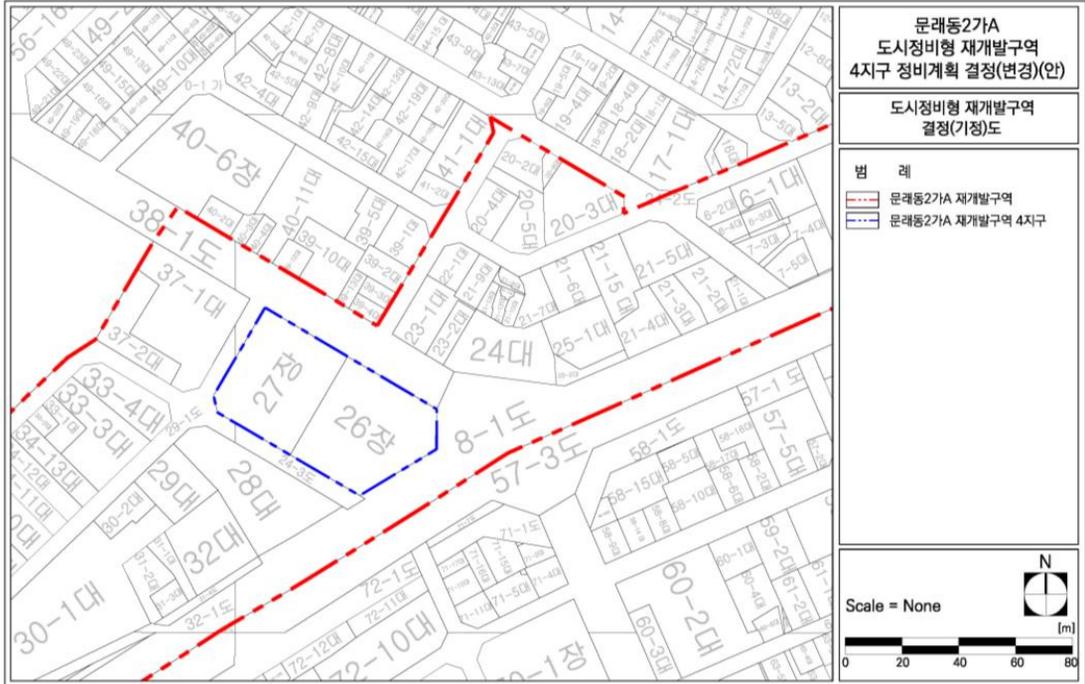
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비고
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	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일부터 4년 이내	토지등소유자	-

마. 관계 도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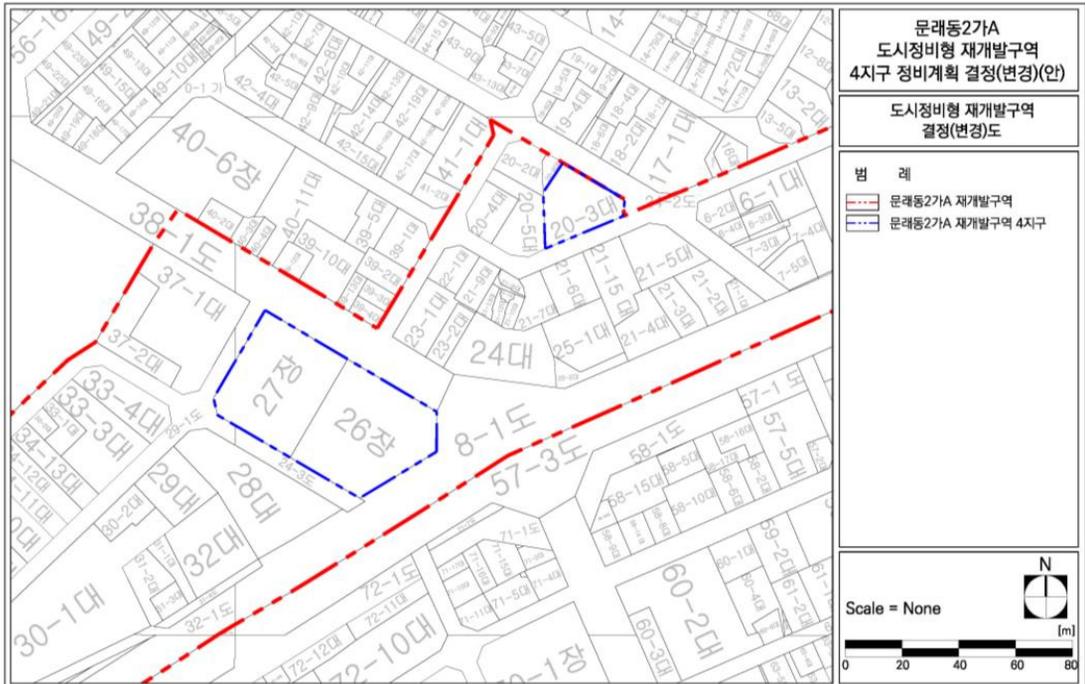
- 기타 정비계획 내용 및 관련도서는 공람장소(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)에 비치된 도서로 같습니다.
- 단,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은 향후 관련부서 협의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바. 관련 도면 : 붙임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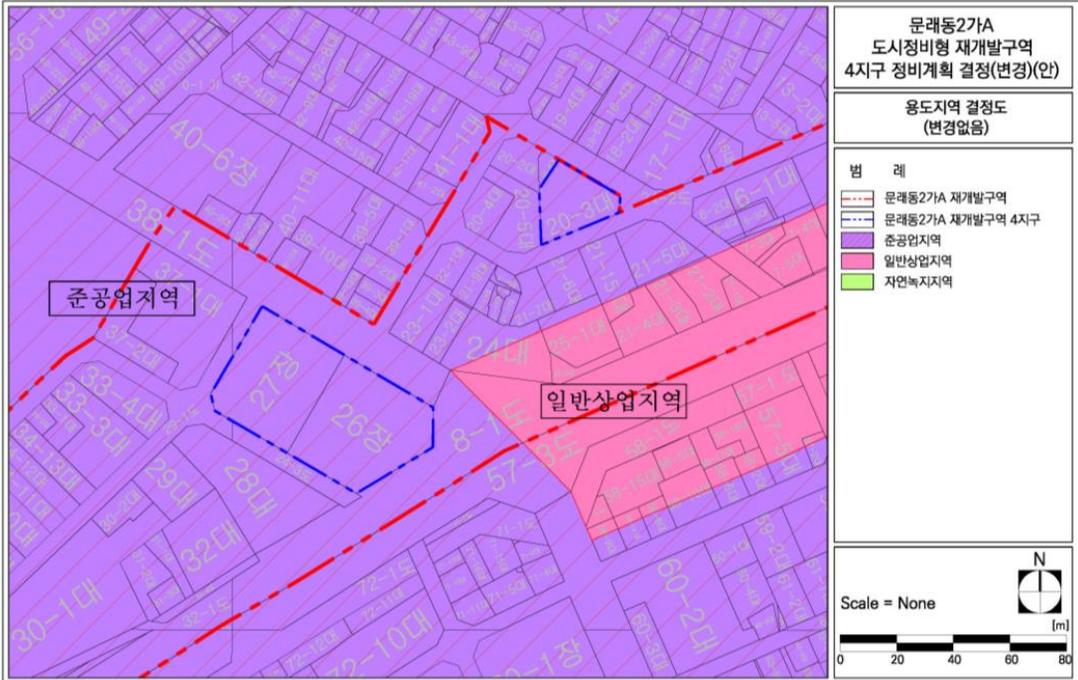
■ 정비구역 결정(기정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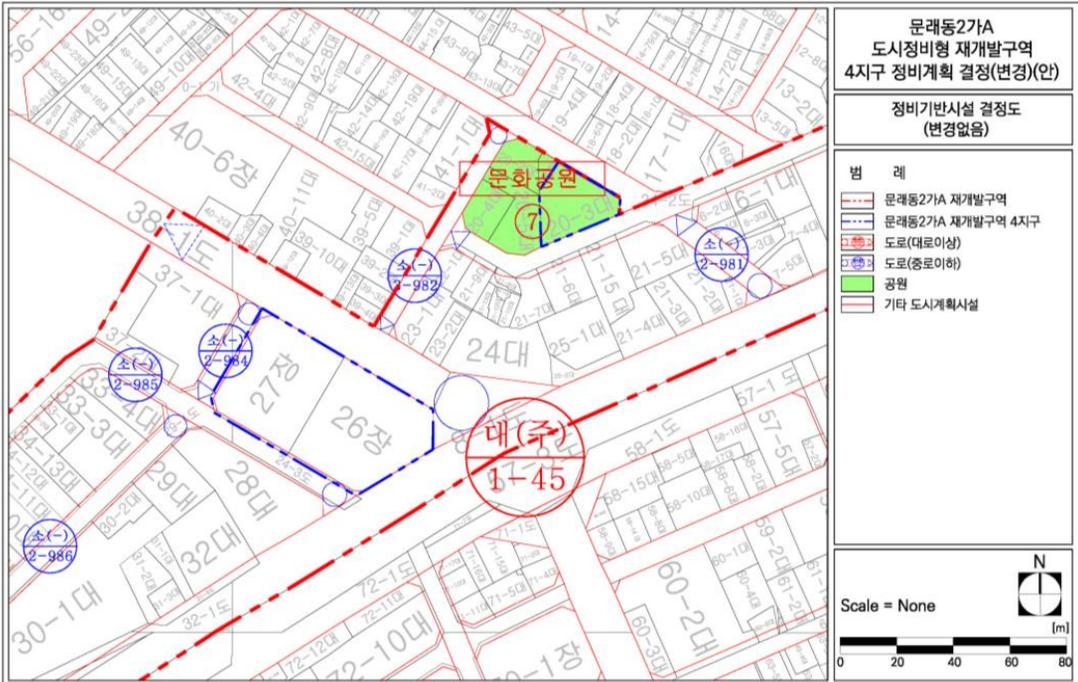
■ 정비구역 결정(변경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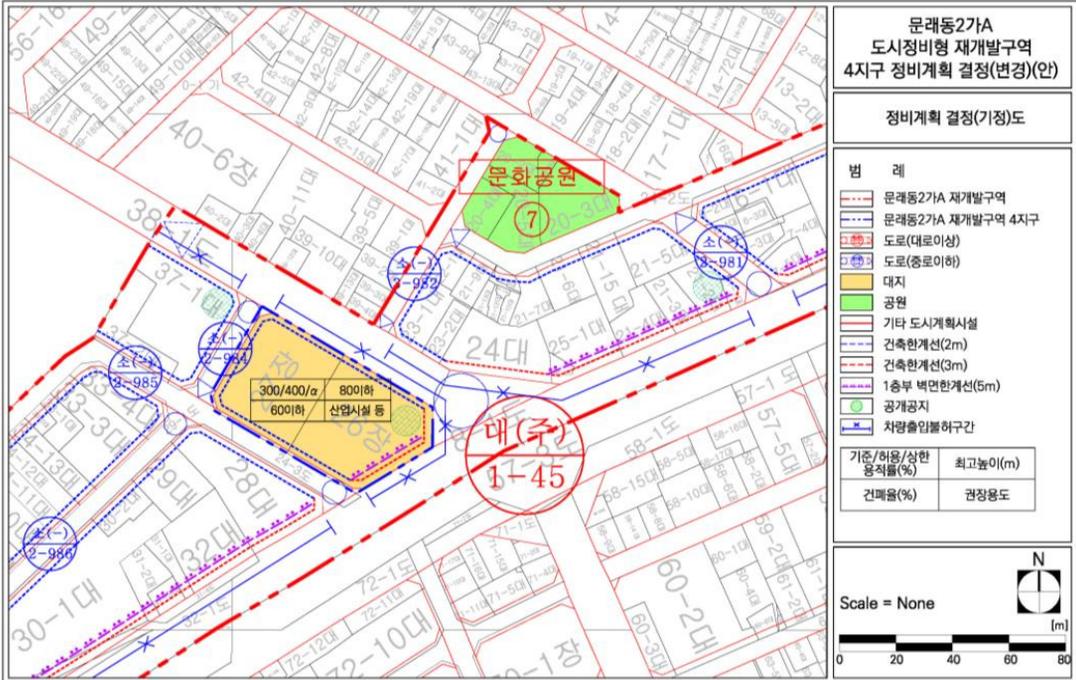
■ 용도지역 결정도(변경없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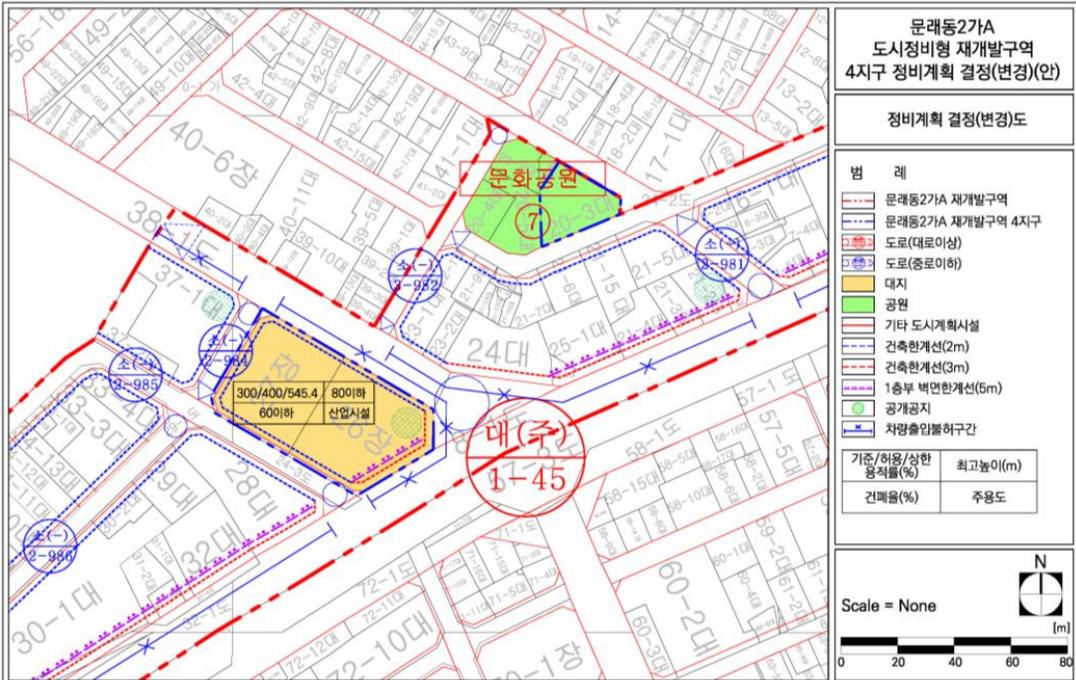
■ 도시계획시설(정비기반시설) 결정도(변경없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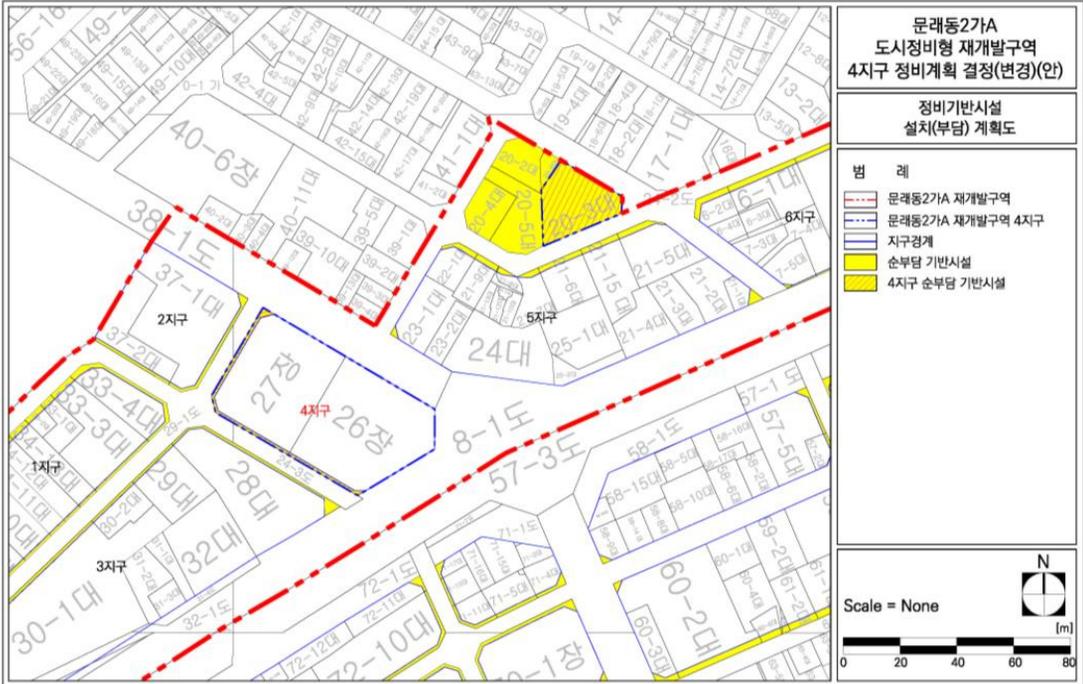
■ 정비계획 결정(기정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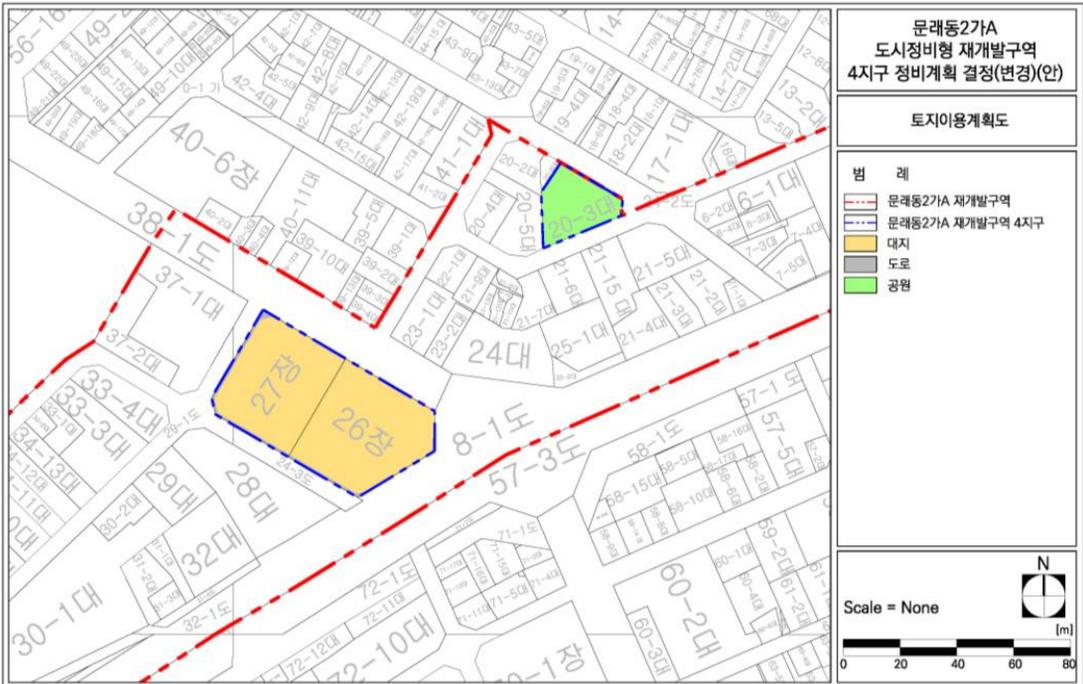
■ 정비계획 결정(변경)도



정비기반시설 설치(부담) 계획도



토지이용계획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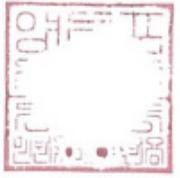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-2055호

공인 등록 공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조례 제8조, 제10조에 의거 공인 등록·폐기 및 동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1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○ 공인 등록 내역

공인 구분	공인명	규격 및 재질	인영	등록사유	등록일
등록	영등포구청장인 현장민원실 통합민원실용1	2.4cm * 2.4cm 우레탄 (특수고무)		자동인증기 이관	2022.11.25.
등록	여의동장인 현장민원실 통합민원실용1	2.1cm * 2.1cm 우레탄 (특수고무)		자동인증기 이관	2022.11.25.
폐기	영등포구청장인 현장민원실 통합민원실용1	2.5cm * 2.5cm 우레탄 (특수고무)		폐기	
폐기	문래동장인 현장민원실 통합민원실용1	2.1cm * 2.1cm 우레탄 (특수고무)		폐기	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-2064호

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

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고,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1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○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

연번	인증번호	상 호 (대표자)	명 칭	종류 및 방식	발급일
1	서울영등포 제6-1-39호 (2022)	태창이엔피 (주)	TCEV2-BLT18 -60-R22-RJ	승강기식 횡식 하부, 중간, 상부승입식(방향전환장치내장형(180도)) 60대형 【수용차량: 중량 1850kg, 길이 5.05m, 높이 1.55m, 폭 1.9m 이하】	2022.11.21.
2	서울영등포 제3-1-16호 (2022)	오텍오티스 파킹시스템 (유)	TR3D-24AOK -단동-서초동	다층순환식 3단 각형 상부승입식 24대형 【수용차량: 중량 1850kg, 길이 5.05m, 높이 1.55m, 폭 1.9m 이하】	2022.11.22.
3	서울영등포 제3-1-17호 (2022)	오텍오티스 파킹시스템 (유)	TR4D-28AOIK -중렬-구의동	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 28대형 【수용차량: 중량 1850kg, 길이 5.05m, 높이 1.55m, 폭 1.9m 이하】	2022.11.22.
4	서울영등포 제8-1-13호 (2022)	오텍오티스 파킹시스템 (유)	VT2D-70AO- 노원파크로	평면왕복식 2단 운반식(종식) 70대형 【수용차량: 중량 1850kg, 길이 5.05m, 높이 1.55m, 폭 1.9m 이하】	2022.11.22.

○ 문의: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☎02-2670-3905